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1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7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육아용품을 대여함에 있어 세부 기준을 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영유아 정의 변경

- 출생 후 36개월 이하의 어린아이 →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○ 육아용품 대여에 관한 세부 내용 추가(제7조)

- 육아용품(유모차) 이용료, 대여기간, 연체료 기준(제7조제1항)
- 육아용품 대여 시 분실, 파손 등에 대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)
- 육아용품 대여 사무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(제7조제3~5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 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지방자치법 제 22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4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(5) 입법예고 :
 - (가) 예고기간 : 2018. 6. 5. ~ 2018. 6. 25.(20일간)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,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[별표]를 따른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·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[별표]를 따른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별표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(제7조 관련)

구 분	내 용	비 고
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납부
대여기간	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	연속하여 대여 불가
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 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
○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
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
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
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

○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배상금액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	없음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	소요비용의 50%
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	500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1. ~ 3. (생략) 4. “영유아”란 <u>출생 후 36개월 이하의 어린이</u>를 말한다. 제7조(육아용품 대여 시 보증금) <u>달성군이 육아용품을 직접 대여하는 경우 그 용품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상환에 맞는 보증금을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</u>	제2조(정의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----- 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 <u>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,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[별표]를 따른다.</u> <u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·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[별표]를 따른다.</u> <u>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

현행

개정안

<신설>

[별표]

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(제7조 관련)

구 분	내 용	비 고
이용료/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납부
대여기간	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	연속하여 대여 불가
미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 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
○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
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
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
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

○ 유모차 파손·훼손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배상금액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	없음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	소요비용의 50%
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	500원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